

보장내용

1) 보험기간

① 위험의 개시

적하보험은 화물이 운송을 위하여 증권상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나 보관장소를 떠나는 때부터 개시됩니다

② 통상의 운송과정

보험계약 "화물이 통상의 운송과정에 있는 동안 계속되고(continuou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)"라고 운송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"항해 중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, 이로, 부득이한 양하, 재선적, 환적 및 해상운송 계약에 의거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결과로 생긴 모든 위험의 변경기간 중"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..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운송계약이 종료된 경우와, 당초 예정한 도착항이 도중에 변경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추가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담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.

③ 위험의 종기

다음의 3가지 중에서 먼저 발생하는 곳에서 위험이 종료됩니다.

- 최종창고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
-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한 중간창고(장소)에 인도될 때
- 본선으로부터 하역 종료 후 60일이 경과할 때 (수입화물의 협정요율에서는 30일 약관(Transit Termination Clause 30 Day)을 사용하고 있음)

2) 보험조건별 담보위험

① 구협회적하약관

- 단독해손 부담보조건(F.P.A. : Free From Particular Average)

단독해손은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되거나 손상된 손해 중 공동해손을 제외한 손해를 의미합니다. 이 조건 하에서 보험 자는 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보험증권과 특별약관이 명시된 담보위험에 따른 손해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전부손해(Total Loss)-현실전손과 추정전손
- 원칙적으로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지만, 보험목적물 적재한 본선 또는 부선이 침몰(sinking), 좌초(stranding), 화재(burning)를 당했을 경우의 단독해손(인과관계 유무를 불문)은 보상
 - 화재, 폭발, 선박 등 운송용구와 타물체(얼음을 포함)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해 생긴 손해 및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에 의해 생긴 손해
 - 보험목적물의 선적, 환적, 하역 중에 생긴 매 포장당 전손
 - 공동해손, 손해방지비용, 구조비, 중간의 기항지 또는 피난항에 있어서 지출된 양하, 보관, 계반을 위한 특별비용 (Special Charges) 및 부대비용. 참고로 공동 해손의 정의를 내리면 공동해손이란 공동항해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위험에 직면 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이상의 희생을 행하거나, 또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희생된 손해와 비용을 공동해손이라 합니다.

• 분손 담보조건(W.A. ; With Average)

이 조건 하에서 보험자는 불특정분손 단독해손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위에서 언급한 FPA 조건에서 담보되는 위험이외에 악천후(Heavy Weather)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해손은 담보됩니다. 단 이 경우 증권본문의 면책을 약관하여 면책비율이 적용되며, 일정비율 미만의 소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. 면책율은 'WA franchise 3% on the whole', 'WA Irrespective of percentage'등으로 증권표면에 명시됩니다.

WA조건 중 WA3%의 3%는 소위 Franchise개념으로써 단독해손이 전체의 3% 미만이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 3%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만 보상한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단독해손이 2.9%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3.1% 전부를 보상한다는 뜻입니다.

참고로 적하보험에서 Excess of X%라고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X%를 공제하고 보상한다는 공제(deductible)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.

• 전위험담보조건(All Risks ; A/R)

보험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의 모든 위험에 대해 면책율에 관계없이 담보됩니다. 즉 전위험담보조건에서 있어서는 보험기간 내에 생긴 모든 위험, 외래적이고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생긴 모든 손해는 면책율 없이 보상됩니다.

그러나 전위험담보조건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기인된 손해는 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

- 피보험자의 고의, 태만, 비행에 의한 모든 손해
- 항해의 지연에 근인 한 손해 또는 비용
- 화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
- 통상의 손해, 자연 소모
- 포장 불완전에 의한 손해
- 원자핵 무기, 전쟁 및 동맹파업에 의한 손해

② 신탁회적약관

• I.C.C.(A)

구 ALL RISKS 약관에 대응하는 약관으로 전위험을 담보하는 포괄책임주의의 약관으로 구ALL RISKS 약관과는 달리 약관 내에서 면책위험을 열거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.

※ 일반면책위험

-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
- 통상적인 누손, 부족손, 자연소모
- 포장 불완전 또는 부적합
- 고유의 하자, 성질
- 지연
- 선박 소유자, 용선자, 운항자의 채무 불이행
- 원자력, 핵무기의 사용

※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

- 선박, 부선의 불내항
- 선박, 부선, 운송용구, 컨테이너, 리프트벤의 부적합

※ 전쟁면책(해적행위 제외)

※ 동맹파업면책

• I.C.C(B)

화재, 폭발, 좌초, 지진, 분화, 낙뢰, 해수, 호수, 강물의 침입 등 열거된 주요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, 면책위험도 열거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.. 분손·전손의 구분 없이 보상하며 면책율의 적용도 없습니다.

• I.C.C(C)

구 F.P.A. 약관과 대응되는 약관으로 I.C.C(B)와 마찬가지로 열거위험에 의한 손해를

분손, 전손의 구분 및 면책율의 적용 없이 보상합니다.

- ※ I.C.C.(B)와 I.C.C.(C)의 면책위험
 - I.C.C. (A)조건에서의 면책위험
 -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파괴
 - 해적행위